

2013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및 의견서

지 적 (건의 · 수범사례) 사 항 목 록

번호	제 목	비고
1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	
2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조치 미흡	
3	이·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불용처리 부적정	
4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철저	
5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관리 철저	
6	대형 생활폐기물 수납금 납입 지연	
7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	건의 1
8	지방채무 적극 상환 노력	건의 2
9	예비비 지출 철저	건의 3
10	공공재산 취득의 적극 추진	건의 4
1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수범사례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

○ 제 목 :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

○ 문 제 점

- 예산의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을 예측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부득이 사업의 추진이 어렵거나 급격한 여건 등의 변동으로 인해 사업 추진 지연할 경우에는 '추경' 등의 과정을 통하여 예산을 정리하여야 함에도 별첨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한 과정 없이 예산전액을 불용처리 한 사실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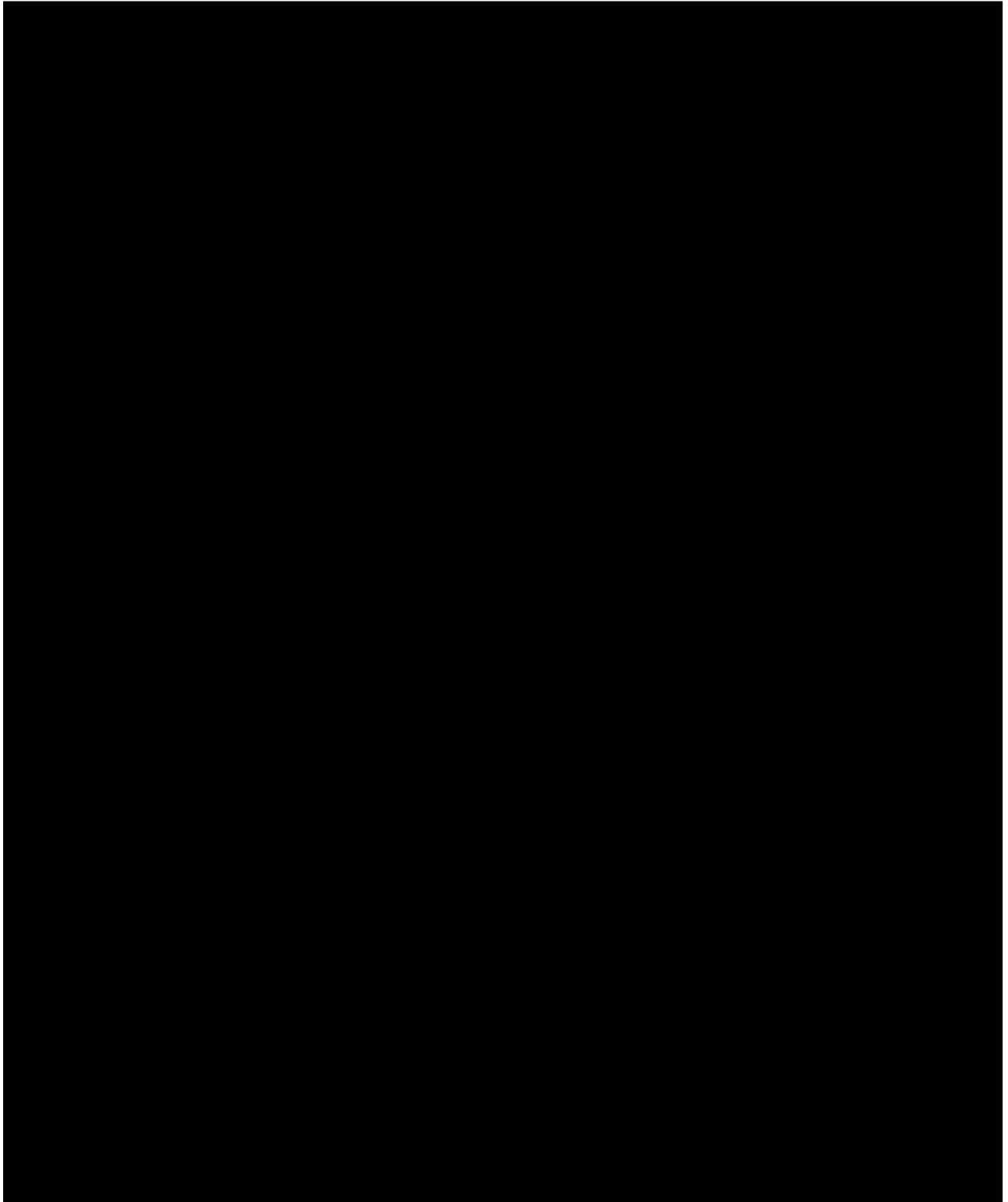
○ 현 황

- 별첨 : 2013회계연도 100% 미집행 현황

□ 감사자 의견

- 향후에는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보다 면밀한 사업분석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추경) 절차를 통하여 예산을 정리하여야 할 것 임.

< 별첨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2

○ 제 목 : 집행잔액 1억원이상 사업에 대한 조치 미흡

○ 현 황

- 별첨 : 집행잔액 1억원이상 사업내역

○ 문 제 점

-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편성 하고, 확정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 에도 주민생활지원과외7개 부서에서는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인력운영비(인건비)외 10개 사업에 2,559백만원의 집행 잔액을 불용처리 한 사실이 있음.

□ 검사자 의견

- 확정된 예산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집행 후 잔액 발생시 추경을 통해 정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추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기 바람.

< 별첨 >

○ 집행잔액(1억원이상)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2,559	
주민생활지원과	기초노령연금지급			11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01-01	245	14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01-01	374	106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101-01	26,032	1,040	
경제체육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01-04	568	104	
환경과	슬레이트처리지원	307-02	480	212	
산림과	조림사업	402-02	235	107	
동계올림픽추진단	동계올림픽홍보시설비		463	120	
농축산과	산지유통기반조성지원	402-01	400	187	
	조사료생산기반확충	307-02	469	289	
기술지원과	감자광역브랜드계열화	402-02	399	138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3
- 제 목 : 이·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불용처리 부적정
- 현 황

(단위 :원)

구 분	금 액	사 유
계	1,065,000	
평창읍	75,000	반장사망, 전출
방림면	50,000	계좌선정 거부
대화면	50,000	반 폐지(5가구)
진부면	580,000	이장, 반장 공석
대관령면	310,000	이장 공석

○ 문 제 점

- 이장, 반장의 활동보상금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임에도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공석이 명확함에도 추경 등에서 정리하지 아니하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사실임.

□ 감사자 의견

- 이장, 반장의 활동 보상금은 본인에게 지급권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실성과 책임성 있게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 등에서 정리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4
- 제 목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철저
- 현 황

(단위 : 원)

제 목	체납금액	부 서	비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한한 법(실거래 위반)	165,926,930	종합민원과	과태료
부동산특별법(등기과태)	12,259,000	종합민원과	과태료
자동차등록, 보험, 검사, 주정차	1,653,706,000	도시주택과	과태료
자연공원법	19,273,600	환경과	과태료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110,000,000	기술지원과	사용료
농지처분이행강제금	35,579,110	농축산과	이행강제금
계	1,996,744,640		

○ 문 제 점

- 세외수입 체납액이 누적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요인이 됨.

□ 감사자 의견

- 효율적 징수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5

○ 제 목 :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관리 철저

○ 현 황

- 햄프 지역특화사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 계 목	예 산 액	집 행 액	불 용 액	비 고
햄프지역 특화사업	201-03	10,000	-	10,000	
	301-10	26,400	-	26,400	
	307-02	17,500	-	17,500	
	402-01	330,000	-	330,000	
합 계		383,900		383,900	

○ 문 제 점

- 햄프(대마)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농가 소득증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햄프 종자의 유지에서 환각성 물질 검출로 모든 연계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관련 사업예산 383,900천원이 불용처리 됨.

□ 감사자 의견

-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분석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편성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추경 시 예산의 변경 또는 삭감 등의 일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정리하여야 할 것임.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6
- 제 목 : 대형 생활폐기물 수납금 납입 지연
- 현 황

(단위 : 원)

읍 면	금 액	지연일수	비 고
계	10,686,700		
진부면	7,218,700	2~3일	
대관령면	3,468,000	2~3일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6조(수납금의 납입)의 규정에 따라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2~3일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음.

□ 검사자 의견

- 수납금 납입 기일을 준수하기 바람.

건의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건의사항

- 관리번호 : 1
- 제 목 : 지방세 체납액 징수철저
- 현 황

(단위 : 원)

세 목	체납액	비고
주민세	26,389,260	
재산세	388,995,340	
자동차세	402,498,200	
지방소득세	279,892,830	
도시계획세	4,860	
지난년도수입	1,365,959,830	
계	2,463,740,320	

○ 문 제 점

- 2013년 강원도 체납액 징수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수상하였음.
- 그러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때 체납액은 예산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검사자 의견

- 효율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 바람.

건의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건의사항

○ 관리번호 : 2

○ 제 목 : 지방채무 적극 상환 노력

○ 현 황

- 2012년말 채무액은 19,680,000,000원으로 그 중 7,680,000,000원을 상환하고
- 당해연도 채무액은 6,180,000,000원이 발생되어 당해연도 말 채무액은 18,180,000,000원으로 7.6% 감소되었음.

□ 검사자 의견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무 축소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무상환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2013년 말 순세계잉여금은 15,254,841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 (20~30%)을 지방채무 상환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건의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건의사항

- 관리번호 : 3
- 제 목 : 예비비 지출 철저
- 현 황

(단위 : 원)

예비비지출사유	지출결정액	지출액	비 고
계	231,972,000	231,972,000	
1.21~22폭설에 따른 제설장비임차료	175,533,000	175,533,000	
2.3~2.6폭설에 따른 제설장비임차료	56,439,000	56,439,000	

○ 문 제 점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규정하고 있는바,
- 당해연도 예비비 지출의 경우 재난방재 경비 중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2건 231,972천원은 평창군의 기후 특성상 년 1~2회 폭설예측이 가능한 경비임.

□ 검사자 의견

- 향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건의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건의사항

- 관리번호 : 4
- 제 목 : 공공재산 취득의 적극 추진

□ 감사자 의견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공공시설 부지매입 및 공유재산 집단화사업에 있어 공공재산 취득사업비 3,350,946천원 중 2,354,536천원을 집행하고 996,410천원이 미집행 되어 27%의 불용액이 발생됨으로써 공공재산의 취득에 있어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됨.

결산검사 수범사례

□ 수범사례

○ 관리번호 : 1

○ 제 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현 황

-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 2012년도 590,472,580원을 징수하였으나
- 2013년도에는 871,078,910원을 징수하여 280,606,330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 2012년도 이월미수액이 2,787,422,370원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2,463,740,320원으로 축소됨
-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2012년도 이월미수액이 3,431,549,880원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2,495,955,219원으로 대폭감소 됨.
- 이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강원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여 기관표창을 받음.

□ 검사자 의견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많은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증대는 중요사항으로 세입부서의 징수노력은 모범 사례임.